

# 審級制度에 관한 試論

—미국제도를 중심으로—

宋 相 現\*

## 1. 머 리 말

심급제도의 논의는 문명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3심제가 부적당하다는 전제 하에서 2심제 또는 4심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3심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심급의 기능과 각 심급간의 상호관계를 재정립할 것인가로 집중된다. 물론 심급제도에 관한 논의는 이처럼 단순화해 버릴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는 않고 많은 다른 논점이 서로 엉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sup>(1)</sup> 그러나 이같은 논의는 국내외에서 계속 다루어지는 학문적 실무적 쟁점이므로 우선 지금까지 20년이상 미국연방법원의 심급제도에 관하여 논의해 온 그네들의 조사연구결과를 검토해서 비판하기로 한다.

## 2. 審級制度에 대한 개혁의 歷史

미국 헌법 제 3조 1항은 司法權은 최고법원과 의회가 때때로 임명하고 설치하는 하급법원에게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sup> 이 헌법규정에 따라서 제정된 1789년의 법원조직법(The Judiciary Act)은 대법관 6인의 대법원과 13개 단독제 지방법원 그리고 地法判事 1인과 大法官 2인으로 순회(circuit riding)하는 3개 순회법원으로 司法府를 발족시켰다. 이같이 사실상 2심제를 한 것은 州法院이 강력하고 대부분의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순회법원은 원래 대법원에 부속된 불완전한 항소심 기능이었으나 1891년의 제 1차 개혁시까지 형사항소 및 상고를 일체 불허하였고 오로지 극히 제한된 범위의 민사상고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 (1) 미국의 법원개혁에 관한 논의 중에는 예컨대 연방대법원의 사물관할(이 경우의 사물관할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제와 합의제를 나누는 뜻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심판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뜻하는 것임)을 축소하려는 의견도 포함된다. 즉 대법원이 헌법규정을 전보적으로 해석하여 낙태, 학교버스운영상의 흑백통합, 政教分離 등에 관하여도 과감한 관례를 낸 것이 의회의 임법권을 잠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반감때문에 많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와 같은 자제한 경향은 Sager, The Supreme Court 1980 Term, Foreword: 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Congress' Authority to Regulate th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Courts, 95 *Harvard L.R.* 17 이하(1981) 참조.
- (2) 미국헌법 제 3조 1항 및 2항이 사법부의 재판권이 어떠한 사건의 심판에 미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우리 헌법이 법원의 심판대상을 범률에 미루고 있는 점과 다르다. 그러나 이같은 차이는 미국이 연방국가이므로 연방법원의 권한과 州司法府의 권한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에서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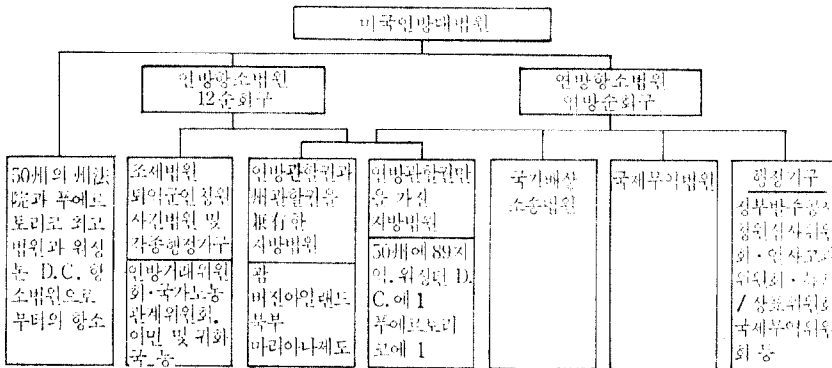
(가액 제한)와 州法의 연방헌법 및 법률위반사건만 허가하여 취급했다.

그러나 국가사회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재판기관은 사건의 폭주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증가로 인한 사건증가라는 단순한 원인 이외에도 예컨대 공해, 민권 등 새로운 유형의 사건의 발생으로 촉진되고 그 결과는 공정한 재판의 수준 내지 질의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美國의 司法制度는 두차례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19세기말 무제한 상고가 허용되어 사건의 적체가 심화되자 무분별한 상고의 여과장치로서 1891년 立法에서 9개의 독립한 순회항소법원과 상고를 위한 certiorari제도를 원칙적으로 채택하는 제 1차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당시 일반분위기는 모든 국민은 최종 권리수호자인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같은 심급개혁은 판결의 결론을 多極化하여 法令解釋의 전국적 통일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혁 반대자들은 차라리 대법원에 두개 이상의 小部를 설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아무튼 1차 개혁의 결과 1890년 623건의 상고사건이 1892년에는 275건으로 줄었다. Frankfurter대법관도 최고법원의 역사는 그 관할권의 점진적 축소의 역사라고 갈파하였다. (3)

제 2차 개혁은 Taft 대법원장의 주도하에 1925년에 통과되어 1927년부터 시행된 法官法(Judges' Bill)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4) 인원과 조직면에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는 외에 대법원의 관할권을 certiorari의 본격적 운영을 통하여 재량수리적 성격으로 확립하고 사건별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구체적 타당성 확보보다 중요한 법령해석기관으로 대법원의 틀을 잡았다. 즉 법적 쟁점만을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최고법원이 되었다. 그 결과 첫해에는 520건

<표 1> 1980년대의 聯邦法院制度



(3) Colema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Managing its Caseload to Achieve its Constitutional Purposes, 52 *Fordham L.R.* (No.1) 1~36 (Oct. 1983)은 그동안 사법개혁의 역사를 개관하고 나서 당면한 문제점을 식별한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의견과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비판의 주류는 후술하는 NCA나 ICP의 창설보다 현재 대법원이 새로운 자제로 여러가지 실무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해결될 것도 많다는 논의이다.

(4) Taft, The Jurisdiction of the Supreme Court under The Act of February 13, 1925, 35 *Yale L.J.* 1~12 (Nov. 1925)에는 Taft대법원장이 자기가 주동하여 통과시킨 法官法(The Judges' Bill)의 취지와 전망을 밝히고 있다.

의 상고허가신청중 97건만 허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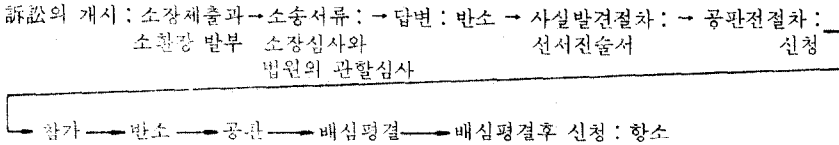
### 3. 司法運營의 현황

제 2 차 개혁이 있는지 약 50년 후인 1972년에도 大法院에 新件 3,748건 未濟 888件 도합 4,636건이 계속중이었는데 대부분 형사사건과 人權事件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오늘날 까지 법원의 대응은 대법관 1人當 1人의 law clerk를 3人으로 증원한 것 뿐이었다.

연방지방법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현재 판사 1人당 비서 2人, law clerk 2人, docket clerk 1人, court reporter 1人 및 수명의 magistrates와 probation officer가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1958년에는 판사 1人당 직원수가 11人이었는데 1982년에는 1:17로 증가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건담당률은 1964년 판사 1人당 77건이었으나 1980년에는 200건으로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law clerk가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와 각종 신청의 처리에 관한 실질적 작업, 법정내에서의 사건진행관리 그리고 사건일정표 및 변호인과의 접견스케줄 결정 등 점점 더 기본적인 법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지방법원에서 사건의 흐름을 보면 민사사건은 년 약 30萬件을 접수하며 年평균 10% 증가하는데 사건유형으로는 不法行爲가 가장 많다. 94개 지방법원의 판사 1人당 연평균 508 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참고로 州法院은 50개주에서 년 2,600萬件을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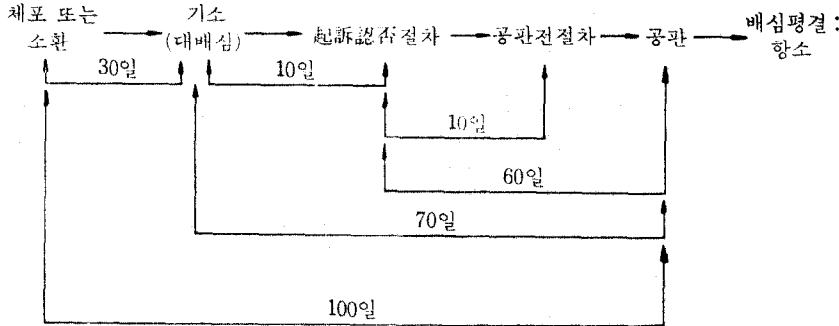
<표 2> 美國 聯邦地方法院: 民事事件節次



합가 → 반소 → 공판 → 배심평결 → 배심평결후 신청: 항소

형사사건은 소송촉진법(The Speedy Trial Act of 1973) 때문에 公判에 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10% 미만인데 이는 협의 없음 또는 plea bargaining을 통한 guilty plea로 도중에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체포에서 공판까지는 약 100일이 걸린다. 연방지방법원은 司法的 正義實現의 감독자이지만 잡다한 행정사무의 폭주, 그리고 평등사상의 보급과 적법 절차(due process)로 인한 사건 증가로 점차 관료화의 길을 걷고 있다. 결국 관료적 방식의

<표 3> 美國 聯邦地方法院: 刑事事件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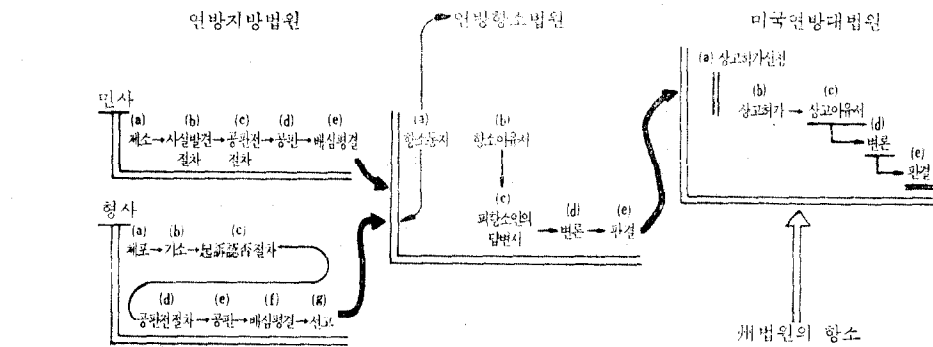


로 사법적 경의를 세우는 조직 즉 jurocracy로 변모되었다고 하겠다.<sup>(5)</sup>

연방항소심은 제 1심 판결의 4% 미만이 항소되므로 그와 같은 민형사 항소사건과 연방 행정심판기관으로부터의 불복을 관할한다. 항소법원은 법원장(chief judge)이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성하는 3人合議法院으로 가동한다. 연방항소법원은 1940년 3,446건을 접수했으나 1960년에는 6,000건 그리고 1984년에는 28,000건을 접수하였다. 사건수의 증가는 물론 그 질이 복잡해지고 있으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미리 다름없는 부분을 확정하고 사건처리방향을 확정해 버리므로 절반이상의 사건은 공판전에 종결된다. 또한 공판에 이르게 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그 절반은 변론만이 판사와 변호인의 유일한 접촉점인데도 불구하고 구술변론을 생략한다. 전원합의제(en banc)는 법원장이 필요시에 소집하지만 Nixon Tape Case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집된다. 항소심은 대법원의 부담을 덜어줄 사실상 최종심으로 생각하고 창설한 것이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大法院은 항소심 판결, 地法의 3人 합의부 판결 및 경우에 따라서는 大法院 판결을 심판한다. 1980년대에는 연평균 5,000건이 상고되었고 년 130~150건을 판결했으며 95% 이상이 certiorari가 기각되었다.<sup>(6)</sup> 현재 1주당 100건 정도 접수하여 년 5,500건이 계속중이므로 대법관 1인당 1일 9.6시간 평균하여 1주일에 6일간 근무하는데 대법관 1인이 1년내내 매일 1,000페이지 이상 기록을 검토하는 셈이다. 그리하여 1년에 대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수가 5,000건을 상회하는데 비하여 판결하는 사건수는 150건 전후이므로 약 35분의 1정도 처리되고 있다. 대법원은 자신이 심리하고자 하는 사건만 골라서 심판하므로 또 하나의 상소법원이라고 볼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정책적 방향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법령해석과 아울러 司法運營에 대한 경영관리자적 배려하에서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 4> 公判부터 最終上訴審 判斷까지의 聯邦司法節次



(5) Ball, The Federal Court System, in *Encyclopedia of the American Judicial System*, Vol. II, pp.554-568 (R.J. Janosik, e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7). 본 논문의 각 도표는 Ball의 논문에서 추출하여 다소 변경을 가한 것임.

(6) Strauss, One Hundred Fifty Cases Per Year: Some Implications of the Supreme Court's Limited Resources for Judicial Review of Agency Action, 87 *Colum. L.R.* (No. 6) 1093-1136(Oct. 1987).

#### 4. 改善策에 대한 논의

오늘날 법조계나 국민의 인식을 보면 대법원이 certiorari를 통하여 상고허가신청의 재량 수리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당사자가 상고허가신청을 통하여 일단 최고법원의 문을 두드려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허가신청 불수리도 대법원의 재판적 의사표시인 만큼 위헌은 아니고 이는 다만 정도의 문제요 다른 필요와 가치와의 균형문제라고 보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와 같은 司法制度 운영의 현황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가지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다.

Griswold는<sup>(7)</sup> 개선책으로서

- ① 地法の 재판을 大法院이 심판하는 경우를 폐지하고
- ② 3人 合議部를 해체하고
- ③ 高法과 大法院 間に 또 한 심급의 법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National Court of Appeals(NCA)를 두어 상고허가신청만 여과해 주면 대법원의 부담경감과 순회항소법원간의 판례충돌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 ④ 가장 많은 종류의 상고사건별로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가급적 정형화하고 보조인원을 늘려서 일차 검토시키고 목록을 작성하며
- ⑤ 대법원은 합헌정부의 최고목표를 지향하는 가장 효과적 심불이어야 하지 위대한 심판부로 계속 남아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그에 합당한 개선책을 꾸준히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25년의 2차 개혁이후에는 지금까지 새로운 사태변화에 대한 사법개혁이 성취된 바 없었고 다만 1971년 대법원장이 Paul Freund를 중심으로 한 7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위촉한 경우와<sup>(8)</sup> 1972년 의회가 Roman Hruska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 결과가 있다.<sup>(9)</sup> Freund위원회는 NCA를 설치하여 상고허가신청을 일차 여과하고 대법원의 재량수리제의 운영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Hruska위원회도 NCA를 창설하여 대법원 또는 다른 항소법원이 회부하는 사건의 중심으로 가동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덧붙여 Burger대법원장은 항소법원간 심의기구(Intercircuit Tribunal)를 설치하여 각 항소법원간의 판결충돌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를 이유로 한 상고전수를 줄이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sup>(10)</sup>

(7) Griswold, The Supreme Court's Case Load: Civil Rights and Other Problems, 1973 *Law Forum* No. 4, 615-634.

(8) 뒤의 註(11)에 있는 Alsup의 논문에 Hruska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이 있다.

(9) Estreicher & Sexton, A Managerial Theory of The Supreme Court's Responsibilities: An Empirical Study, 59 *N.Y.U.L.R.* 681-1003 (Oct, 1984)는 Hruska위원회와 Freund위원회의 NCA 창설건의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논문이다.

(10) Burger, The Time is Now for the Intercircuit Panel, The State of The Judiciary Address,

결국 지금까지의 다양한 개혁논의의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 ① 대법원의 권한과 기능 일부를 다른 법원에 위임하여 상고사건의 선정 또는 결정을 하게 하는 방안<sup>(11)</sup>
- ② 입법으로 대법원의 관할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
- ③ 대법원 자체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좀더 강력하게 자기네가 심판할 사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방안

이들의 개선책에 대한 검토논의를 보면 제 1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하급심의 잘못을 시정하는 기능보다 至高한 헌법적 가치의 선언자 및 수호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논평이 다수이다.

Pound는 법원 조직의 통일성, 신속성, 독립성 및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성의 관점에서 특별법원을 濫設하기보다 법관의 전문화가 중요하고, 신속성은 신속하고 능률적인 재판을 위한 尺度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원래 1國에 1최고 법률심과 1사실심의 조직으로 족하므로 중간위치에 있는 항소법원은 최고법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고 심급제도 개혁의 논의의 核心도 항소법원의 개편문제라고 한다.<sup>(12)</sup> 따라서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항소심을 속심으로 할 이유가 없고 항소심의 심리는 certiorari 발동에 의하여 대법원으로 갈 것인가를 주로 결정해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이는 영국의 형사항소법원의 기능과 운영상 동일하다고 한다.

Posner는 비용효과분석의 면에서 법원운영을 검토하였다.<sup>(13)</sup> 그에 의하면 연방법원은 분쟁해결, 법창조 및 위헌법률심사(judicial review)의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같은 서비

71 *ABA Journal* 86~91 (April, 1985) 참조. 또한 Burger대법원장이 Judicial Conference—Federal Circuit에서 한 비슷한 취지의 연설 참조. 100 *F.R.D.* 499 534-538면.

- (11) 이중에서 National Court of Appeals를 창설하자는 방안에 대하여 비판한 글로는 Alsup, Reservations on the Proposal of the Hruska Commission to Establish a National Court of Appeals, 7 *Toledo Law Review* 431-455 (Winter, 1976); Swygert, The Proposed National Court of Appeals: A Threat to Judicial Symmetry, 51 *Indiana L.J.* 327-373 (1976) 참조.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Warren大法院長은 反對하고 Burger대법원장은 찬성하였는데 이는 59 *ABA Journal* 721-730 (July, 1973) 참조. 그리고 ICT의 창설에 반대하는 견해로는 Note, The Intercircuit Tribunal and Perceived Conflicts: an Analysis of Justice White's Dissent from Denial of Certiorari During the 1985 Term, 62 *N.Y.U.L.R.* 610-650 (1987) 참조. ICT의 창설에 찬성하는 견해로는 Baker and McFarland, The Need for a New National Court, 100 *Harvard L.R.* 1400-1416(1987) 참조.
- (12) Pound, Organization of Courts(1940), from Nelson, *Cases and Materials on Judicial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West Pub. Co., 1974) pp.784-791.
- (13) 法經濟學者로서 유명한 Richard A. Posner는 *The Federal Courts: Crisis and Reform*(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에서 비용효과분석의 관점에서 심급제도의 운영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書評으로는 Hellman, Courting Disaster, 39 *Stanford L.R.* 297-315(Nov, 1986); Varat, Economic Ideology and the Federal Judicial Task, 74 *Calif. L.R.* 649-674 (1986) 및 Jay, The World According to Judge Posner, 73 *The Georgetown L.J.* 1507-1544 (1985) 각 참조.

스에 대한 수요는 ① 법률상 관할권에 관한 규정, ② 사법적 심판에의 적합성(justiciability) ③ 실제법상의 권리범위에 좌우된다고 한다. 그리고 법원이용의 빈도수 즉 사법 서비스에 대한 수요공급은 ① 인구활동 ② 소송 성패 예측 ③ 소송비용의 다과 ④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의 이용가능성에 좌우된다. 그러나 사건증가의 원인은 인구증가와 경제발전보다도 제소요건 완화나 장애제거, 그리고 의회의 새로운 규제입법이나 새로이 실제법상 권리를 창조하는 입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그동안의 대책은 주로 공급확대 즉 판사나 사법사무보조자의 증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확대는 경제적 최적규모를 넘어서면 판사나 law clerk의 질과 판결의 질을 저하시키며 절차운영상으로도 변론제한 내지 생략, 판결 공표제한, 이유를 안붙인 판결의 증가 등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법관이 되는 동기로서 보수, 권한, 독립성, 사회적 지위, 일의 보람등을 들 수 있는데 사건 폭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위와 일의 보람이 특히 감소되었다.

피라미트식 3심구조는 법원에게 요구되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불가결한 선택으로서 1심 단독 법관은 분쟁해결자이고 항소심 법관과 대법관은 일치된 법원칙의 제공자로서 법창조 임무를 분담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무제한의 공급확대(판사 증가 등)보다 폭주하는 사건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Posner의 주장이다. 그리하여 법원을 엘리트 기관으로 유지하여 질적 수준의 저하를 막아야 하는데 조세 법원 이외에 법원의 전문화(특별법원 설치 등)는 직업에 대한 만족을 뺏고 판사의 질을 저하시키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 하면 전문화는 한가지 이데올로기에 의해 쉽게 지배되고, 행정부나 입법부의 영향을 더 쉽게 받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나 접근방법을 제공하지 못하는 동시에 관할분쟁의 증가와 급격한 법률환경변화에의 대처능력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비용조절(price rationing)을 통하여 사건수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넓게 보아서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항소심(특히, 해산심판 등)을 법률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1심은 판사의 수를 무제한 증원해도 무관하나 상급심 법관의 수는 최적 규모를 발견해야 한다.

### 5. 要約된 改革論議의 檢討

본 논문은 序論的 試圖이므로 NCA 또는 ICT에 해당되는 새로운 법원을 창설함으로써 법원의 심급구조에 변혁을 초래하는 방향의 개선책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方向 이외의 개선책에 관한 것을 간단히 요약하고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법원의 심급구조를 바꾸지 아니하고 上告事件의 선별방식과 기준을 과감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은데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고칠 부분도 없지 아니하나 상당부분 대법관의 의식전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본다. 즉 상고제도의 목적을 당사자의 권리구제로부터 법령해석의 통일로 점차 이행하여 가는 일

방 법률심의 본질적 성격에 맞도록 상고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고사건에 대한 판단을 해나가면 대법원의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이나 최고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再定立의 시도가 스스로 이루어져야 하겠다.<sup>(14)</sup>

둘째 권리상고제도를 폐지하고 모두 허가상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certiorari申請을 許可하거나 각하하는 선별적 수리결정 자체가 재판이기 때문에 허가상고제로 일관한다고 하여 국민의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特例法을 통하여 이같은 제도를 수년간 실시하다가 폐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허가상고제를 실시하는 동안에도 대법원이 기록을 모두 검토한 후에 상고허가상의 適否를 결정하였던 실무는 잘못된 것이었다. 원심판결과 양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서 및 그 이유서만을 토대로 판단하여 허가신청을 받아들이는 결론에 도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送付하라는 命令을 내리는 것이 certiorari의 本意이거늘 처음부터 기록을 모두 가져다 검토하고 나서 上告許可申請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니 어느 당사자인들 파기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잘못된 실무관행과, 그 決定에 理由를 붙이지 아니하는 사정이 結合되어 허가상고제도가 在野의 배척을 받고 마침내 폐지의 운명을 감수하게 된 것은 不幸한 일이다.

셋째 상고이유서(또는 상고허가신청이유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서류를 법률적 쟁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격화함과 동시에 이를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認證 또는 선서하게 하여 적식에 어긋난 서류작성이나 상고(또는 허가상고신청)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용부담이나 기타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개선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큰 어려움 없이 도입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네째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문제는 별도의 기회에 詳論하기로 하나 만일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일반법원의 채널을 모두 경유하여 지연된 판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상고를 포기하는 대신 전문법원에 가서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판단을 받아 사건을 빨리 종결할 것인가를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14) Estreicher and Sexton, *Redefining The Supreme Court's Role: A Theory of Managing the Federal Judicial Proc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는 대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재정립함으로써 개혁논의의 상당한 부분을 수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비판적 書評으로는 Baker, Siskel and Ebert at *The Supreme Court*, 87 *Mich. L.R.* 1472 (May, 1989) 참조.